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약칭

[시행 2014.11.21.] [법률 제12621호, 2014.5.20., 일부개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